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에 대한 신규지정 요구와 기존 세관장 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품목조정 반영 및 2022 HSK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행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사유 및 시행일

#### 1. 개정사유

-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 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품목조정 반영 필요
  - \*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5년마다 개정되는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변경, 삭제되는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사항 반영 필요

2. 시행일(예정) : 2022. 1. 1.

### II. 주요 개정내용

1.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 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87개 순감\*

\* 수출(추가 192개, 삭제 177개), 수입(추가1,102개, 삭제1,169개)

\* 총 세관장확인 품목 (HSK기준) 변화 : (전) 6,152개 →(후) 6,605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요건 수	품목 수(HSK)	요건 수	품목 수(HSK)
수출	1,413	1,210	1,428	1,213
수입	7,794	4,942	7,727	4,852
계	9,207	6,152	9,155	6,065

2.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 방법 등 규정(제3조,제6조)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신 설>	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3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신 설>	③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대외무역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제7조)

현 행	개 정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리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① ----- ----- <u>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요건은</u> -----. ② ----- -----. 1. 「 <u>대외무역법 시행령</u> 」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 물품(제2호의물품은 제외한다). ----- -----. 2. (현행과 같음) 3. ----- ----- <u>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 수출입자</u> ----- -----.

4.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별표5)

\*[별표5] 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대상법령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업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III.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 김인순 사무관, 문현준 담당
- 제출기한 : 2021.12.9.(목)
- 제출방법 : E-mail([mkun@korea.kr](mailto:mkun@korea.kr)) 또는 FAX(042-481-7895)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정전문\)세관장확인고시](#)

[\[붙임2\] \(신구대조표\)세관장확인고시](#)

[\[붙임3\] \(입안계획서\)세관장확인고시](#)

[\[붙임4\] 개정전문\(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붙임5\] 개정전문\(별표 2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붙임6\] 신구대조표\(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붙임7\] 신구대조표\(별표 2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 | Contact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mailto:clkim@esein.co.kr)



안성호 관세사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mailto:shah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